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02호

도시관리계획(명례체육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 **"http://www.eum.go.kr/"** 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공원여가정책과, 기장군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6. 06. 03.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명례체육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공원

구분	도면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320	명례 체육공원	체육 공원	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-2번지 일원	50,330	감) 284	50,046	부고 제2024-274호 ('24.09.04)	

○ 공원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320	명례 체육공원	○ 면적변경 - A=50,330㎡ → 50,046㎡ 감) 284㎡	○ 지적분할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

2. 지형도면 : 제재 생략(토지이음 "http://www.eum.go.kr/" 에서 열람 가능). 끝.